

안산 한신더휴 |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분	내용	
신청자격	▶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안산시 및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①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포함) ② 「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 이상 ※ 혼인신고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. - 2018.12.11.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	
선정방법	① 우선공급(7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 ② 일반공급(3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 ※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미선정 시 일반공급(30%)에 포함	
경쟁시 우선순위	▶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, 입양 포함) ② 2순위 : 무자녀 / 2018.12.11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	▶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안산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(태아포함)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(태아포함)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
유의사항	※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	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표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~ 120% 이하	6,030,161원 ~ 7,236,192원	7,094,206원 ~ 8,513,046원	7,094,206원 ~ 8,513,046원	7,393,648원 ~ 8,872,376원	7,778,024원 ~ 9,333,628원	8,162,400원 ~ 9,794,87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 ~ 140% 이하	6,030,161원 ~ 8,442,224원	7,094,206원 ~ 9,931,887원	7,094,206원 ~ 9,931,887원	7,393,648원 ~ 10,351,106원	7,778,024원 ~ 10,889,232원	8,162,400원 ~ 11,427,35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~ 160% 이하	7,236,193원 ~ 9,648,256원	8,513,047원 ~ 11,350,728원	8,513,047원 ~ 11,350,728원	8,872,377원 ~ 11,829,835원	9,333,629원 ~ 12,444,837원	9,794,880원 ~ 13,059,838원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자료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• 재직증명서 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제출	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• 재직증명서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•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	•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• 세무서
	법인사업자	•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• 세무서 • 등기소
	간이과세자 소득세 미신고자	•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	• 세무서 • 국민연금관리공단
	신규사업자	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• 국민연금관리공단 •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•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• 주민센터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• 계약 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	• 해당직장 •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• 비사업자 확인 각서	• 견본주택	